

 <b>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제2000-76호)</b>			2002-01-03
■ 담당부서	정보통신사업	■ 담당자	이범영 750-1323 (lbyeong@mic.go.kr)
위치	HOME > 정책넷 > 고시자료 > 고시현황		

### 전기통신사업의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76호, 2000. 10. 5)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금지행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라 함은 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과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 관한규칙, 전기통신설비의제공조건및대가산정기준,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전기통신설비의공동사용등의기준, 전기통신설비의정보제공기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및표준양식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관련법령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2. "상호접속등"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을 말한다.
3. "협정등"이라 함은 상호접속등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간에 체결한 협정과 협정의 체결이나 이행을 위한 합의 또는 계약을 말한다.
4. "접속등제공사업자"라 함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자사의 다른 전기통신업무 부문에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 부문은 독립된 접속등제공사업자로 본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5. "접속등이용사업자"라 함은 접속등제공사업자에게 상호접속등을 요청하거나 접속등제공사업자와 협정등을 체결하여 상호접속등을 제공받는 전기통신사업자(자사의 다른 전기통신업무 부문에 상호접속등을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전기통신업무 부문은 독립된 접속등이용사업자로 본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의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대상) ①이 고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관계 등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행한 금지행위는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행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법령등에 의하여 접속등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따라 상호접속등을 제공받는 접속등이용사업자는 이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업무 이용자로 볼 수 있다.

#### 제2장 협정체결 거부등

제4조(협의 거절) ①접속등제공사업자는 접속등이용사업자로부터 협정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자료요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접속등제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접속등이용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협의가능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절차 지연) ①접속등제공사업자는 접속등이용사업자로부터 협정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접속등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접속등제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사유와 협의가능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한 조건의 요구) 접속등제공사업자는 접속등이용사업자로부터 협정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가나 조건을 요구하여 협의를 불가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등에 의한 대가산정기준을 초과한 대가 또는 실소요비용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
2. 법령등에 의하여 접속등제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접속등이용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조건
3. 기타 접속등이용사업자가 경제적·물리적·기술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

제7조(협정체결 거부) 접속등제공사업자는 접속등이용사업자로부터 협정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법령등의 규정에 의한 협정체결기간내에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협정변경 거부)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법령등의 변경,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 법령등이나 협정에 의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협정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변경의 거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협정등 불이행)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협정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2. 협정등의 이행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기타 협정등에서 정한 방법, 절차, 품질, 용량등과 다르게 협정등을 이행하는 행위

제10조(협정이행계약의 체결거부)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 또는 계약(이하 "협정이행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행계약의 체결거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정"은 "협정이행계약"으로 본다.

제11조(개별적인 불이행행위) ①접속등제공사업자는 접속등이용사업자가 협정등에 따라 특정구간이나 전기통신설비등에 대하여 상호접속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협정불이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정체결"은 "상호접속등"으로 본다.

제12조(협조 거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거

부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호접속등에 이용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설치 또는 개조를 거부하는 행위
2. 상호접속등에 이용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3. 통신품질저하·호소통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접속등이용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통신품질조사나 관련 전기통신설비 등의 설치 또는 개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행위
4. 접속등이용사업자가 통신망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동등한 상호접속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를 부착·이용하는 것을 거부·방해하는 행위

②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협정불이행에 대하여 이를 존중한다. 이 경우 "협정체결"은 "협정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로 본다.

제12조의2(기타 불공정행위)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협정등의 내용을 일방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등에 정하는 행위
2. 협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을 주지 아니하는 내용을 협정등에 정하는 행위
3. 법령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협정등에 규정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제13조(불이행의 판단기준) 협정등의 불이행여부는 협정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협정등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된 경우에는 체결된 협정등을 불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차별 금지) ①접속등제공사업자는 협정등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접속등이용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보 유용

제15조(정보의 유용)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등으로 인하여 알게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를 유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를 당해 정보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부서등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2.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취급 담당자 지정, 정보열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정보의 유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정보의 범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술방식·상호접속체계(접속점·접속용량·접속통화량 등)·전기통신역무의 품질 등 전기통신기술관련 정보
2.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구성 요소·단위 원가·구매 정보·요금 산정의 기초자료 등 회계관련 정보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이용자 이용 실적 등 이용자관련 정보
4.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관련 정보 등

#### 제4장 이용요금등의 부당한 산정

제17조(회계규칙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는 법령등에 위반한 방법으로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역무간 내부보조) 전기통신사업자는 특정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로 분류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등을 다른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로 분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가격요소 조작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료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용이나 자산 등을 부당한 가격으로 지출·구매하거나 평가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2. 법령등이나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원칙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3. 원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이용요금을 결정·유지하는 행위
4. 법 제34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원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은 전기통신역무에 부대되는 서비스의 대가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을 조건으로 하는 전기통신설비등(이하 "제공설비"라 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담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제5장 이용약관 위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제20조(이용약관 위반행위의 유형)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용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령등이나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청약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법령등이나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변경·양도·양수·취소·해지를 제한하는 행위

4. 삭제(2000. 9. )

5.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부가 서비스 또는 제공설비를 제공하는 행위

6.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용요금(부가 서비스 및 제공설비 대가를 포함한다)을 감면하는 행위

7. 이용약관에 위반되거나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선택요금이나 이용자등급을 적용하는 행위

8.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대하여 이용약관과 다른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전기통신사업자가 연30일의 기간내에서, 1가입자당 가입자 연평균 이용요금 부과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범위내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제공설비의 대가를 제외한다)을 감면하는 것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약관에 위반한 감면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의 연평균 이용요금 부과금액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제공설비의 대가를 제외한다)을 전년도말 가입자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제20조의2(부당 요금청구)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용계약에서 정한 요금제와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요금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중대한 오류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21조(부당한 계약체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용약관 및 법령 등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가입자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등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법령등이나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21조의2(시외전화 사전선택 제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전선택변경 관련 신청서를 사전선택변경등록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2. 법령이나 협정등에 의하여 사전선택 관련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자가 사전선택관련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3. 사전선택관련기관에서 가입자 의사확인 등을 거쳐 정당한 변경신청이라고 확인하였음에도 사전선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행위

4. 협정등을 위반하거나 경쟁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보다 현저히 불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이용자를 오인시키거나 역무제공 주체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제21조의3(신용불량자 등록 제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명의도용등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익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이용자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17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등 관계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요청하면서 등록요청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신용불량자 등록과 관련된 자료를 신용불량자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신용불량자등록이 취소되는 날까지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연체요금의 납부등 요금체납의 원인이 소멸된 것을 알면서 지체없이 신용불량자 등록 취소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2조(이용자 차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전기통신역무 또는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나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다른 이용자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게 유리한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이하 “우대조건”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 3.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으로 인하여 절감할 수 있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게 유리한 우대조건을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체결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행위로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제22조의2(결합판매)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결합판매(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통신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와 타 재화 또는 용역을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개별구매가 가능한 전기통신역무에 대해 결합판매의 방식으로만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2. 결합판매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절감에 비해 현저히 할인(무료통화나 경품의 제공과 같은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포함한다)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 3.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장기간의 계약조건으로 결합판매를 하는 행위

②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정한 전기통신역무를 결합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정한 전기통신역무와 관련된 시장의 지배력이 다른 시장에 전이되지 아니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합판매를 할 수 있으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나 통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3조(선택 제한행위)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행위(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삭제(2000. 9. )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독점적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이용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독점적 전기통신역무에 부수되는 서비스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차별·제한하거나 철회하는 행위
5. 정당한 상관행에 어긋나는 장기간의 배타적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6. 법 제4조제3항제2호의 사업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3자에게 구내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행위로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

제24조(기타 이용자이익저해행위)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정하는 행위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정하는 행위
3. 삭제(2000. 9. )

## 제6장 보 칙

제25조(기간) ①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또는 지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령등이나 협정등에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2. 별도조사와 다른 기관의 협조등이 요구되는 사항은 90일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사항은 30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히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의한다.

제26조(면책 사유) ①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른 행위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고시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당해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신위원회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③신고된 행위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신위원회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위원회에 상호 접속등에 관한 협정체결, 협정이행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금지행위가 인지·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고 당해 재정으로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실이 보정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보류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취하되거나 당해 재정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